

2019년 2학기 학점은행제 **현장실습과목** 모집 요강

구분	공 통 사 항			
접수기간	2019. 6. 24 (월) ~ 8. 23(금) (선착순 마감)			
접수상담 / 서류제출	접수문의 : 053)320-1283~5 서류제출 :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사무실 (대구아트센터 3층 302호) 접수시간 : 평일 09:00~15:00 (저녁 8시까지 서류 제출은 가능 / 점심시간 12시~13시)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인터넷, 전화 접수 불가)			
과 목 명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	
모집인원	160명	80명	80명	
수 강 료	27만원(3학점,학점당 9만원)	27만원(3학점,학점당 9만원)	27만원(3학점,학점당 9만원)	
교 육 일 (이론수업)	2019년 9월 5일(목) 2019년 9월 19일(목) 2019년 9월 26일(목) 2019년 10월 24일(목) 2019년 11월 28일(목)	2019년 9월 2일(월) 2019년 9월 16일(월) 2019년 9월 23일(월) 2019년 10월 21일(월) 2019년 11월 25일(월)	2019년 9월 3일(화) 2019년 9월 10일(화) 2019년 9월 17일(화) 2019년 11월 26일(화) 2019년 12월 3일(화)	
수업시간	18:30~21:30 (1일3시간)	18:30~21:30 (1일3시간)	19:00~22:00 (1일3시간)	
출석평가 기 준	총 5회 중 4회 이상 출석 (80% 이상 출석)	총 5회 중 4회 이상 출석 (80% 이상 출석)	총 5회 중 4회 이상 출석 (80% 이상 출석)	
선수과목*)	총 6개 과목 이상 이수자 (필수4개+선택2개 과목이상)	총 5개 과목 이상 이수자 (2018학년부터 적용)	총 4개 과목 이상 이수자 필수4개 과목이상	
실 습	방법	수강 신청 전 개인별 선정	수강 신청 전 개인별 선정	
	실습 선정 지역	대구지역, 경북권 일부 (교육기관에서 왕복 2시간 거리 이내)	대구지역	
	기간	9. 16(월) ~ 11. 22(금) * 기간 내 실습을 마쳐야함	9. 9(월) ~ 11. 29(금) * 기간 내 실습을 마쳐야함	9. 18(수) ~ 11. 29(금) * 기간 내 실습을 마쳐야함
	시간	120시간	240시간	160시간
접수서류	① 수강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성적확인서	① 수강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성적확인서	① 수강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성적확인서	
수납처	우리는행 1006-101-222860 /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현장실습 신청자격요건 : 선수과목이 수강중이거나 미 이수한 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세부 요강

사회복지현장실습

□ 현장실습 신청 자격 : 실습 선수 이수과목

- 1) 필수 4개과목 이상 이수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2) 선택 2개과목 이상 이수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장론, 사회문제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 실습처 선정

- 1) 실습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해야 함(관련 법령 [표1] 참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lic/SearchPracticeOrgan.action>)에서 「현장실습 등록&검색」을 통해 검색하여 선정할 수 있음

단, 등록된 기관이 아니어도 관련법령에 의해서 실습은 가능하며 실습 불가한 기관일 경우 실습기관 재선정 해야함(실습지도교수와 협의)

- 2) 실습처의 지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자격기준에 준한 자로 선정해야 함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반드시 상근직 이어야 하며 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 3) 실습처는 대구지역 및 경북권 일부까지 가능함(왕복거리 2시간 이내)
- 4)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1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해야 함(실습이수시간 중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제외)
- 5) 주말 실습의 경우 실습지도자의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대표자 및 시설장 등 사업주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으로 상근여부를 확인해야 함
- 6)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지도교수 현장 점검 필수)
- 7) 본인 근무기관에서는 실습 불가 함(근무지 운영주체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기관도 동일한 직장으로 간주함)

□ 실습 의뢰

- 1) 실습기관의 섭외 및 실습협조는 실습생이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2) 실습지도자는 1회기(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당 1인 최대 5명 이내로 배정하고,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3) 실습지도비는 수강생 개인이 실습기관과 협의 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개인 부담)

[표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세부 요강

보육실습

□ 현장실습 신청 자격 : 실습 선수 이수과목

- 1) 5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 해야함(전체 과목은 수강신청서 확인)
- 2) 2014년 2월 28일까지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아동발달은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인정되므로, 아동발달 1개 교과목과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중 1개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 해야 함
- 3) 실습시간 이수기준 : 6주 240시간 실습기준 적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관련으로 실습시간 기준을 6주 240시간으로 시행함

□ 실습처 선정

- 1) 실습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선정**하여야 함

보육실습 기관은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http://daegu.childcare.go.kr/cccf/main.jsp>)
내 **어린이집검색을 통해 등록된 실습기관 확인**

- 2) 실습지도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자격기준에 준한 자로 선정해야 함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

(단, 보육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원장이 담임을 맡고 있을 경우 실습지도 가능)

- 3) 실습기관은 **대구지역만** 가능함
- 4) 실습기간은 6주 240시간으로 하며 1일 8시간 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7시 사이에 한 경우만 인정 함(분할 실습 가능 함. 4주 연속+2주 연속)
- 5) 4대 보험가입자는 퇴사 또는 휴직 처리 후 실습가능 하며 휴직해당자는 휴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6) 본인 근무지 기관에서는 실습 불가함
- 7)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지도교수 현장 점검 필수)

□ 실습 의뢰

- 1) 실습기관의 섭외 및 실습협조는 실습생이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2) 실습지도자 1인 최대 3명 이내로 지도 하여야 함
- 3) 실습지도비는 평생교육원으로 납부 후 평생교육원에서 기관에 납부함

세부 요강

평생교육실습

□ 현장실습 신청 자격 : 실습 선수 이수과목

- 1) 필수과목 4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실습처 선정

- 1) 실습처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및 제19조~21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표2] 참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practice/recruit>)에서 **실습기관정보 탭(실습생 모집)**을 통해 검색하여 선정할 수 있음

- 2)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지침(2015. 2 교육부)의 자격기준에 준한 자로 선정해야 함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자로 선정해야 함**(관련업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함)

- 3) 실습처는 **대구지역 및 경북권 일부까지 가능함**(왕복거리 2시간 이내)
- 4) 현장실습기간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총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실습은 1일 8시간(09:00~18:00), 주 5회(월~금)실습
- 5)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하나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간 또는 주말에 실습을 할 경우 해당시간에 개설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
- 6)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지도교수 현장 점검 필수)

□ 실습 의뢰

- 1) 실습기관의 섭외 및 실습협조는 실습생이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2) 실습지도자 1인 최대 5명 이내로 지도 하여야 함
- 3) 실습지도비는 수강생 개인이 실습기관과 협의 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개인 부담)

[표2]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구분	기관유형		예시	
평생교육법	① 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	
	② 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③ 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④ 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 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고·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령*	⑥ 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⑦ 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⑧ 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⑨ 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